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2016. 10. 26)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6년 10월 19일(수)

○ 제 출 자 : 김윤정 의원 외 8명

3. 의안 회부일자

○ 2016년 10월 20일(목)

4. 관계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구성·운영 조례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규정 신설 (안 제21조의 2)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동(同) 조례안은 제21조의2(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등)를 신설함,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의2(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등)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재난 현장을 총괄·지휘하는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재난 현장의 실무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동(同) 조례안은 지진, 화재 및 건축물 공사장 관련 피해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 효율적인 재난안전 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여러 현장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상황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현장 통합지휘소인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 동(同) 조례안은 2016.10.20.~10.24.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상황 관리 위주의 재난 대응체계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이 모든 재난상황을 본부에서 총괄·지휘하고 있으며, 재난 현장에서는 현재도 부구청장이 현장에서 발생한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재난대책을 총괄·지휘하고 있으나, 우리 구 조례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이번 조례에서는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현장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현장을 총괄·조정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의 본부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부구청장의 통솔·지휘 아래 재난현장 상황 파악 보고와 재난현장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처리사항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를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재난대비책 마련은 물론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관 계 법 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6.9.23.〕〔법률 제14079호, 2016.3.22., 타법개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시·군·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군·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지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재난현장에서 인명의 탐색·구조
2.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의 배치와 운용
3. 추가 재난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4.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의 부여
5.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6. 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현장접근 통제, 현장 주변의 교통정리, 그 밖에 긴급구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⑤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장비·물자에 대한 운용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현장지휘를 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하 "각급통제단장"이라 한다)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

⑥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은 각급통제단장이 수행하는 긴급구조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⑦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통합지원본부의 장에게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⑧ 재난현장의 구조활동 등 초동 조치상황에 대한 언론 발표 등은 각급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가 한다.

⑨ 각급통제단장은 재난현장의 긴급구조 등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⑩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을 종료하려는 때에는 재난현장에 참여한 지역사고수습본부장,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급통제단장은 긴급구조 활동 종료 사실을 지역대책본부장 및 제5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장, 시·도긴급구조통제단장,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의 장, 광역구조본부의 장, 중앙구조본부의 장으로 각각 본다.